



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달라집니다

2011년 9월 30일부터
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됩니다





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알아봅시다

□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?

- ◎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, 그 개인을 “알아볼 수 있는 정보”를 말합니다.
- ◎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,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.

※ 개인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?

일반정보 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

경제정보 - 소득, 재산상황, 신용, 부채 등

사회정보 - 학력, 성적, 병역, 직업, 자격 등

통신정보 - 전자우편, 통화내용, 인터넷 접속 IP, 로그(log) 등

민감정보 - 사상, 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정보 등

□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은 왜, 언제 만들어 졌을까요?

- ◎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.
- ◎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은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었으며 2011년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.
- ※ 인터넷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제공 의무는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.

□ 「개인정보보호법」,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?

- ◎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, 사업자, 단체에 적용됩니다.
 - 개인정보보호법은 ‘업무를 목적으로’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사업자에 모두 적용됩니다.
 -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·단체 약 350만개에 적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.
 - 개인정보보호법은 컴퓨터로 처리되는 DB 형태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, 신청서 서식 등 종이문서에 수기로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.
- ◎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 등 처리단계에 따른 보호기준이 마련됩니다.
 - 개인정보의 수집, 제3자 제공시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(개인)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처리목적 달성시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.
- ◎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이 강화됩니다.
 -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되며, 인터넷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
- ◎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운영이 제한됩니다.
 -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공익적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.
- ◎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통지 및 신고제도가 신설됩니다.
 -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,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행정안전부나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◎ 정보주체(고객)의 권리 보장이 강화됩니다.
 -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.

사업자의 조치사항을 자세히 알아봅시다

① 회원·멤버십 가입, 이벤트 개최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?

- 원칙적으로 정보주체(고객, 회원 등)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야 합니다.

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래의 4가지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(1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| (2) 수집하려는 항목 |
| (3)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 | (4)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|

- 그러나, 법령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.

⇒ 개인정보 수집원칙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참고하세요 

② 제3자와의 업무제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?

-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
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아래의 5가지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1)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| (2)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|
| (3)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| (4)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|
| (5)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| |

- 그러나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, 범죄의 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업무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⇒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원칙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, 제18조를 참고하세요 

③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때는?

- 개인정보 처리를 대리점, 위탁점, 콜센터 등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위탁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

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정보주체에게 아래의 2가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1)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| (2)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(수탁자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- 사업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합니다.

⇒ 개인정보 취급위탁 원칙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를 참고하세요 

④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?

-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관리적 조치, 개인정보 접근통제,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조치, 개인정보 보관장소의 출입통제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⇒ 안전성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를 참고하세요 😊

- ④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합니다.

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, 제31조를 참고하세요 😊

⑤ 개인정보 파기는 언제 어떻게?

- 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,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.
 - ②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 - ③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⇒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를 참고하세요 😊

3

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알아보시다

① 직원(근로자)의 개인정보도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?

- ①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은 고객, 회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직원(근로자)의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.
- ② 이에 따라 사업자는 직원 채용, 인사 관리 등을 위해 수집·이용하는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.

- (1) 직원 채용시 –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 획득(근로기준법 등 참조)
- (2) 인사 관리시 – 인사관리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금지
- (3) 직원 퇴직시 – 복무기록 발급, 사회보험 증명 등을 위해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근거 또는 직원 동의하에 보존

② 주민등록번호나 민감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?

- 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‘고유식별정보’ 및 사상·신념, 건강, 성생활 등 ‘민감정보’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.

- (1)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
- (2) 법령에서(구체적으로)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

⇒ 고유식별정보, 민감정보 처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, 제24조를 참고하세요 😊

③ 민간 기업에서 CCTV를 설치·운영하려면?

- ◎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설치·운영이 금지되나, 공개된 장소에 아래의 경우에는 설치·운영할 수 있습니다.

(1)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(2) 범죄예방 및 수사, 시설안전,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

- ◎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⇒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⇒ 안내판 미설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참고하세요 

④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면?

- ◎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아래 사항을 알리고(유출통지·신고제),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(1)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(2) 유출된 시점과 경위
(3)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(4)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
(5) 정보주체가 신고할 수 있는 담당부서, 연락처

- ◎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결과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나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
※ 전문기관 지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.

⇒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※ 개인정보 유출신고 : www.privacy.go.kr

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를 참고하세요 

4

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대해 알아보시다

- ① 정보주체(고객)에게는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이 있습니다.

- ◎ 정보주체(고객)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◎ 사업자는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⇒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부당하게 제한·거절하거나 정정·삭제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~제38조를 참고하세요 

- ②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됩니다.

- ◎ 정보주체의 권리·이익 보장,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·운영됩니다.

- ①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(www.privacy.go.kr)을 운영합니다.
 -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책 자료와 교육·홍보 자료 다운로드,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②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.
 -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(www.privacy.go.kr) ⇒ 사이버교육을 방문하시면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대한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- ③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 지원합니다.
 -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'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'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(www.privacy.go.kr) ⇒ 교육에서 전문강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- ④ 향후 개인정보보호법, 시행령, 각종 지침 고시, 매뉴얼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(www.privacy.go.kr)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